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8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김준형
강경숙 · 한창민 · 용혜인
김재원 · 김선민 · 이해민
신장식 · 황운하 · 박은정
차규근 · 윤종오 · 백선희
손 술 · 정혜경 · 최혁진
전종덕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 1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등 또 는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같은 법 제47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금액